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3266 제안연월일: 2024. 8.

<u>번호</u> 3200 제 안 자: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연 번 | 의안명 | 대표발의자 (제출자) | 발의일 (제출일) | 심사경과 |
|-----|------------------------------|----------------|--------------|---|
| 1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064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2024. 5. 31.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2024.7.24.) 상정·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 토론·소위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8.27.)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 영폐기) |
| 2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408호)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 2024. 6. 12.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3.) 상정·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 토론·소위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8.27.)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 영폐기) |
| 3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538호)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 2024. 8. 2. |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에 직접 회부(2024.8.22.)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8.27.) 상정·축조심사(대안반영폐 기) |
| 4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756호) | 정부 제출 | 2024. 8. 12.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3.) 상정·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 토론·소위회부 |

| 연 번 | 의안명 | 대표발의자 (제출자) | 발의일 (제출일) | 심사경과 |
|-----|-----|----------------|--------------|---|
| | | |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8.27.)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 영폐기) |

- 가.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8. 27.)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나. 제417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8. 27.)는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한편,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세월호 사건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상속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안 제50조, 제51조 신설).
- 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 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신설).

-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112조제4호 삭제).
- 라. 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 날(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부양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공동상속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부칙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52조의2 중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 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 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

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있다.
-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 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1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4조의 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 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3조(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상속권 상실 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第50條(分事務所設置의 登記) ① 法人の 分事務所를 設置한 때에는 主事務所所在地에서는 3 週間內에 分事務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하고 그 分事務所所在地에서는 同期間內에 前條第 2項의 事項을 登記하고 다른 分事務所所在地에서는 同期間內에 그 分事務所를 設置한 것에 그 分事務所를 設置한 것

②主事務所 또는 分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登記所의 管轄區域內에 分事務所를 設置 한 때에는 前項의 期間內에 그 事務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하 면 된다.

을 登記하여야 한다.

第51條(事務所移轉의 登記) ①法 人이 그 事務所를 移轉하는 때 에는 舊所在地에서는 3週間內 에 移轉登記를 하고 新所在地 에서는 同期間內에 第49條第2 項에 掲記한 事項을 登記하여 야 한다.

②同一한 登記所의 管轄區域內

개 정 안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 의 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 事務所)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에서 事務所를 移轉한 때에는 그 移轉한 것을 登記하면 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 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 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 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 여야 한다.

第85條(解散登記) ①淸算人은 破産의 境遇를 除하고는 그 就任後 3週間內에 解散의 事由 및年月日,淸算人의 姓名 및 住所와 淸算人의 代表權을 制限한때에는 그 制限을 主된 事務所및分事務所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

②第52條의 規定은 前項의 登 記에 準用한다.

<신 설>

|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 _ |
|--------------------|----------|
|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
|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치 | |
| 분의 등기) | - |
| | - |
| | - |
| | - |
| <u> 주사무소</u> | - |
| | - |
| | |
|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 - |
|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 | - |
| 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어 |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 <u>.</u> |
|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
|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 |
|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 |
|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힌 | _ |
| 경우에는 그 제한 | |
|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 <u>-</u> |
| 제52조를 준용한다. | |
|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 <u>)</u> |
|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시 | _ |
| 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 _ |
|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여 | ĺ |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 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경우
-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 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있다.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 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 ⑤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 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 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 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3. (현행과 같음) <<u>삭 제></u>

第1112條(遺留分의 權利者와 遺留分) 相續人의 遺留分은 다음各號에 依한다.

1.~3. (생략)

4. 被相續人의 兄弟姉妹는 그 法定相續分의 3분의 1